

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 :)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세액공제 요건 확인 (⑥ ≥ ⑦이어야 함)	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	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

④ 세액공제 계산내용

가. 정규직 전환 근로자

⑧ 성명(생년.월.일)	⑨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매월분의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	⑩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)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(정규직 전환 연월일)	⑪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, 7천 만원 이상 고액연봉자, 최 대주주·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이 아닐 것
A (. .)	여, 부	여, 부(. .)	여, 부
B (. .)	여, 부	여, 부(. .)	여, 부
C (. .)	여, 부	여, 부(. .)	여, 부
D (. .)	여, 부	여, 부(. .)	여, 부
E (. .)	여, 부	여, 부(. .)	여, 부

나. 세액공제액

⑫ 해당 과세연도 임금	⑬ 직전 과세연도 임금	⑭ 임금 증가분 합계액 (⑭-⑮)	⑰ 공제율	⑱ 세액공제금액 (⑭×⑰)
A				
B				
C				
D				
E				
합 계 ⑭	⑮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1. ⑭란 및 ⑮란의 "합계"에는 임금 합계액을 적되,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(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)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⑰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20%, 중견기업은 10%, 그 외 기업은 5%를 적용합니다.